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 설치 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법인 및 각 시설의 실적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협의기구(協議機構)입니다.

이에 우리 회사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해『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 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총무팀 실무진과 부서별 참여자 1명씩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각 부서에서는 부서장과 직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부서별 참여자 1명씩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서별 참여자는 부서장을 제외한 직급으로 결정하여 주십시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회사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 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5일

사단법인 효경 이사장 김양희

